

6 총신대학교 보고

제105회기 총신대학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재단이사장 김기철
총 장 이재서

A. 법인

1. 조직

1) 법인이사회

- 이 사 장 : 김기철
- 이 사 : 이 송 류명렬 이진영 이광우 송태근 이규현 화종부 소강석 장창수 강재식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 김종혁
- 감 사 : 김정환 남서호

2) 직원현황

- 법인사무국 : 국장 권주식, 과장 유상용, 직원 최가슬 윤단비(이사장 비서)

2. 2020학년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결산서

1) 법인일반회계 (기간 : 2020.3.1. ~ 2021.2.28.)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650,000,000	272,981,548	377,018,452	수익사업 전입금 64,281,548 일반 기부금 43,700,000 지정 기부금 165,000,000
	교육외수입	120,000,000	2,557,885	117,442,115	예금이자 2,232,885 잡수입 325,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0	134,954,909	-134,954,909	
	수입 계	770,000,000	410,494,342	359,505,658	
지출	보수	192,000,000	178,476,952	13,523,048	직원급여 165,089,192 직원법정부담금 13,387,760
	관리운영비	223,000,000	173,345,289	49,654,711	일반관리비 12,628,830
					(여비)교통비 225,000
					소모품비 2,710,740
					통신비 560,190
					제세공과금 4,636,500
					지급수수료 4,496,400
					운영비 160,716,459
					(일반용역비) 93,150,000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업무추진비 15,502,795 회의비 40,700,000 기타운영비 11,363,664
	교육외비용	100,000,000	0	100,000,000	
	전출금	250,000,000	0	250,000,000	
	예비비	5,000,000	0	5,000,00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0	16,563,972	-16,563,972	퇴직기금적립 16,563,97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42,108,129	-42,108,129	
	지출 계	770,000,000	410,494,342	359,505,658	

2) 법인수익회계 (기간 : 2020.3.1. ~ 2021.2.28.)

(단위 : 원)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교육 외 수입	305,000,000	382,595,960	-77,595,960	예금이자수입 830,797 임대료수입 372,813,303 잡수익 8,951,860
	고정부채입금	65,000,000	470,000,000	-405,000,000	
	기본금	0	0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0,000,000	255,589,651	-215,589,651	
	수입 계	410,000,000	1,108,185,611	-698,185,611	
지출	보수	39,000,000	32,134,450	6,865,550	인건비 32,134,450
	관리운영비	138,000,000	159,268,900	-21,268,900	기타판매외관리비 66,036,020 제세공과금 93,232,880
	교육외비용	108,000,000	82,799,722	25,200,278	지급이자 82,799,722
	전출금	100,000,000	64,281,548	35,718,452	수익사업전출금 64,281,548
	예비비	5,000,000	0	5,0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0	0	0	
	고정부채상환	20,000,000	468,102,600	-448,102,6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301,598,391	-301,598,391	
	지출 계	410,000,000	1,108,185,611	-698,185,611	

3. 2021학년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예산서

1) 2021학년도 법인일반회계 (기간 : 2021.3.1. ~ 2022.2.28.)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2021학년도 예산액(A)	2020학년도 예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1,050,000,000	650,000,000	400,000,000	수익사업 임대료 수입 총회 및 이사 후원금
	교육외수입	20,000,000	120,000,000	-100,000,000	예금이자 수입 및 잡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0	0	0	
	수입 계	1,070,000,000	770,000,000	300,000,000	
지출	보수	192,000,000	192,000,000	0	직원 4명, 월 16백만 직원 사대보험 법정부담금
	관리운영비	368,000,000	223,000,000	145,000,000	복합기 렌탈, 업무결재 교통비, 이사회 회의비, 소모품비 등
	교육외비용	0	100,000,000	-100,000,000	
	전출금	500,000,000	250,000,000	250,000,000	법정부담전출금
	예비비	5,000,000	5,000,000	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5,000,000	0	5,0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	0	
	지출 계	1,070,000,000	770,000,000	300,000,000	

2) 2021학년도 법인수익회계 (기간: 2021.3.1. ~ 2022.2.28.)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2021학년도 예산액 (A)	2020학년도 예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350,000,000	285,000,000	65,000,000	임대료 수입
	잡수익	0	20,000,000	-20,000,000	
	타인자본 현금유입	40,000,000	65,000,000	-25,000,000	임대보증금 수입
	전기이월자금	20,000,000	40,000,000	-20,000,000	
	수입 계	410,000,000	410,000,000	0	
지출	인건비	36,000,000	36,000,000	0	직원 2인 급여 및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3,000,000	3,000,000	0	직원 사무실 경상비
	세금과공과	89,000,000	74,000,000	15,000,000	재산세, 부가세 등
	기타판매외관리비	50,000,000	64,000,000	-14,000,000	수도/전기료, 수수료 등
	법인일반회계전출금	100,000,000	100,000,000	0	수익사업전출금
	이자비용	100,000,000	108,000,000	-8,000,000	대출(기채) 이자비용
	예비비	12,000,000	5,000,000	7,000,000	
	타인자본 현금유출	20,000,000	20,000,000	0	임대보증금 환급 (백일상가 공실 가능성 대비)
	지출 계	410,000,000	410,000,000	0	



B. 총신대학교

1. 보직 (2021. 7. 30. 기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총장	이재서	목회훈련지원처장	김희석
대학 부총장	손병덕	대학원 교학지원처장	양혜원
신학대학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	정승원	대학 교목실장	함영주
통합대학원원장	김성욱	경건훈련처장	정원래
경건훈련원장	김광열	중앙도서관장	이희성
기획조정실장	조기현	산학협력단장	손병덕
교원인사연구처장	이희성	개혁신학연구처장	이상웅
대학 교무지원처장	정희정	양지도서관장	이상웅
입학인재개발처장	백은령	미래식교육처장	황선우
교육복지처장	김정희	대외협력홍보처장	라영환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장	문병호	총무지원처장대우	윤화수

2. 교원현황 (2021. 7. 30. 기준)

1) 대학

(1) 대학: 전임교원 58명

- ① 신학과(12): 장성민(기독교철학), 정창욱(신약학), 안인섭(역사신학), 신현우(신약학), 이희성(구약학), 황선우(구약학), 김주한(신약학), 윤형철(조직신학), 류길선(교회사), 박희석(실천신학), 나영환(조직신학), 임창일(구약학)
- ② 기독교교육과(4): 유은희(기독교교육), 함영주(기독교교육방법), 김수환(컴퓨터교육), 이종민(기독교교육)
- ③ 영어교육과(6): 함영용(영어학), 이성희(영어교육학), 김영숙(영어교육학), 이지연(영어교육학), 최윤희(영어교육학), 한미아(영미문학)
- ④ 역사교육과(4): 조훈(동양사), 권태경(서양사), 허은철(역사교육), 송용섭(한국사)
- ⑤ 유아교육과(6): 정희영(유아교육), 김미경(유아교육), 허계형(유아교육), 정대현(유아교육), 김정희(유아교육), 정희정(유아교육)
- ⑥ 교회음악과(9): 김수연(바이올린), 정지강(피아노), 장영희(오르간), 하재송(음악이론), 김수진(성악), 유지수(피아노), 한경석(성악), 이원정(작곡), 강기성(지휘)
- ⑦ 아동학과(3): 강란혜(아동발달심리), 조혜정(기독교아동교육), 강유진(가족학)
- ⑧ 사회복지학과(5): 손병덕(사회복지), 백은령(사회복지실천), 양혜원(사회복지실천), 전미애(사회복지), 오혜정(사회복지)
- ⑨ 중독재활상담학과(1): 조현섭(중독재활상담)
- ⑩ 교육학과(3): 정한호(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성원(교육학), 김한나(교육행정)
- ⑪ 호크마교양교육원(5): 김정열(융합컨텐츠학), 이성희(한국문학), 정규훈(동양철학), Heidi Nam(교양영어), Scott Shepherd(교양영어)

(2) 산업교육학부 : 전임교원 4명

- ① 아동학과(2) : 김정열(청소년지도), 이하원(아동심리 및 언어인지)
- ② 유아보육학과(3) : 허미애(유아교육), 방은영(유아교육)

2) 대학원**(1) 신학대학원 : 전임교원 30명**

- ① 구약신학(5) : 김지찬(구약학), 김희석(구약학), 박철현(구약학), 김대웅(구약학), 김영욱(구약학)
- ② 신약신학(5) : 김상훈(신약학), 박형대(신약학), 이상일(신약학), 조호형(신약학), 이풍인(신약학)
- ③ 조직신학(5) : 김광열(조직신학), 문병호(조직신학), 강웅산(조직신학), 정승원(조직신학), 이상웅(조직신학)
- ④ 역사신학(5) : 박영실(교회사), 윤종훈(교회사), 김요섭(교회사), 정원래(교회사), 서창원(교회사)
- ⑤ 실천신학(9) : 김창훈(실천신학), 오태균(목회상담학), 김준(목회상담학), 박현신(실천신학), 양현표(실천신학), 김대혁(실천신학), 주종훈(실천신학), 안은찬(실천신학), 윤영민(실천신학)
- ⑥ 선교신학(1) : 배춘섭(선교학)

(2) 교육대학원 : 전임교원 3명

- ① 유아교육전공(3) : 강은주(유아교육), 신현정(유아교육), 김정준(유아교육)

(3) 선교대학원 : 전임교원 3명

- ① 선교학과(3) : 김성욱(선교학), 정병관(선교학), 김희백(국제리더십)

(4) 목회신학전문대학원 : 전임교원 6명

- ① 목회학과(7) : 박태현(실천신학), 채이석(교회성장학), 정우홍(설교학), 안영혁(설교학), 고광석(선교학), 김용욱(실천신학)

(5) 상담대학원 : 전임교원 1명

- ① 성경적상담(1) : 김규보(성경적 상담)

(6) 평화통일개발대학원 : 전임교원 3명

- ① 평화통일개발(3) : 채경희(통일교육, 북한학), 최광수(북한선교), 하광민(사회복지)

3) 평생교육원 : 전임교원 2명

- ① 평생교육원(2) : 송준인(조직신학), 김선영(첼로)



3. 직원현황 (2021. 07. 31. 기준)

1) 기획조정실(1) : 조기현(실장)

- ① 기획혁신팀(4) : 이성준 유원근 오영일 이학왕

2) 경건훈련원

- ① 섬김교목팀(1) : 김정호
- ② 경건훈련팀(3) : 구자봉(팀장) 서영주 심순희

3) 교원인사연구처 교원인사연구팀(5) : 최성연(팀장) 김지혜 박상협 최신혜 곽은정

4) 대외협력홍보처 대외협력홍보팀(4) : 박만규(부팀장) 방세영 김승철 송준민

5) 교무지원처 교무지원팀(7) : 나용균(팀장) 김화현 이지영 맹다니엘 박지윤(호크마교양교육원) 김종규(교수-학습개발원) 안현모(매체지원실)

6) 입학인재개발처 입학인재개발팀(3) : 나용균(팀장) 이경근 김하은

7) 교육복지처 교육복지팀(6) : 이경립(팀장) 임성희 박훈정(총신상담센터) 김준수(장애학생지원센터) 양갑필(보건실) 김종덕(보건실)

8) 미래지식교육처 미래지식교육팀

- ① 사당평생교육원(4) : 김진효(팀장) 김아정 정수지 김소희
- ② 원격평생교육원(9) : 김진효(팀장) 유진희 이시윤 김지나 탁명진 황금애 임제라 유재인 김학출

9) 총무지원처(1) : 윤화수(처장)

- ① 총무시설팀(17) : 양광모(팀장) 남상민 민성호 임자운 홍대표 박준호 이철우(기계설비)
문춘기(전기음향) 전광표(영선) 이광선(영선) 정한석(영선) 안정숙(미화)
정양연(경비) 원진연(경비) 김영규(경비) 성효숙(식당) 김천일(생활관)
- ② 재무회계팀(5) : 최선숙(팀장) 노지영 김종현 천우신 황교성
- ③ 전산정보팀(5) : 김선영(팀장) 윤석일 진대훈 김상혁 임성진
- ④ 양지시설지원팀(7) : 장원철(부팀장) 홍충식 홍성지 우인구(기계설비) 정진호(기계설비)
서지연(비서) 김동현(생활관)
- ⑤ 예비군대대(1) : 조경근

10) 대학원 교학지원처

- ① 대학원 교학입학팀(4) : 곽훈(팀장) 정상균 이은영 김종욱
- ② 계약학과팀(3) : 곽훈(팀장) 정남희 조영신

11) 신대원 교무지원처 교무입학팀(3) : 김성수(팀장) 나영민 임한나

12) 신대원 목회훈련지원처 신대원목회훈련교류팀(4) : 구자봉(팀장) 문호영 문동일 이소희

13) 개혁신학연구처 개혁신학연구팀(4) : 송치명(팀장) 허선경 이은숙 차운환

14) 부속부설기관(3) : 강문진 한점숙 정유경(산학협력단)

15) 대학(3) : 오지현(교육학과) 김정인(원격교육지원센터) 김소연(원격교육지원센터)

4. 학생현황

1) 대학

학과명	학년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휴학생	계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과	85	91	105	120	0	141	542	
기독교교육과	29	29	35	48	1	29	171	
영어교육과	27	24	33	40	0	25	149	
역사교육과	28	27	34	43	0	32	164	
유아교육과	48	51	58	59	1	11	228	
교회음악과	61	63	57	80	2	55	318	
아동학과	17	17	22	25	1	9	91	
사회복지학과	33	28	45	56	1	42	205	
중독재활상담학과(주)	8	7	17	21	0	12	65	
중독재활상담학과(재)	0	0	0	2	0	0	2	
아동학과(계약)			4	13	0	0	15	
아동상담심리학과(계약)			11	10	0	0	23	
유아보육학과(계약)								
계	336	337	421	517	6	356	1,973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근거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임

2) 신학대학원

구분	석사		계
	재학생	휴학생	
1학년	379	72	451
2학년	386	24	410
3학년	423	8	431
S.T.M	30	0	30
계	1,218	104	1,322

3) 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과정	학과/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신학과	71	3	62	10	-	-	71	217
	기독교교육학과	9	0	2	0	-	-	3	14
	유아교육학과	0	0	1	1	-	-	1	3
	유아교육학과(계약)	0	0	0	0	21	4	0	25



과정	학과/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휴학생	계
	교회음악학과	0	0	0	0	-	-	0	0
	계	80	3	65	11	21	4	75	259
박사과정	신학과	25	0	24	2	24	3	23	101
	기독교교육학	0	0	0	0	0	0	0	0
	기독교유아교육	0	0	0	0	0	0	0	0
	기독교사회복지학	0	0	0	0	0	0	0	0
	유아교육학과(계약)	16	0	12	0	0	10	4	42
	성경적상담학	0	0	0	0	0	0	0	0
	계	25	0	24	2	24	3	23	101
	합계	66	0	60	4	48	16	50	244

(2)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12	0	12	0	-	-	5	29
박사과정	15	1	7	4	7	0	23	57
계	27	1	19	4	7	0	28	86

(3) 선교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34	2	32	6	7	81
계	34	2	32	6	7	81

(4) 교육대학원

과정	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기독교교육	13	3	7	0	9	4	36
	영어교육	0	0	0	0	1	0	1
	역사교육	5	-	-	-	-	0	5
	유아교육	27	1	30	4	33	12	107
	유아교육학(계약)	34		37		20	1	92
	계	79	4	74	4	63	17	241

* 역사교육전공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전공임.

(5) 사회복지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14	0	13	1	10	5	43
계	14	0	13	1	10	5	43

(6) 상담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30	5	26	1	22	12	96
석사과정(계약)	20	0	29	0	0	0	49
계	50	5	55	1	22	12	145

(7) 교회음악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9	4	3	5	7	9	37
계	9	4	3	5	7	9	37

(8) 평화통일개발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8	-	-	-	-	0	8
계	8	-	-	-	-	0	8

*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대학원임.

4) 평생교육원 / 원격평생교육원

(단위: 명)

구분		1학기	2학기	계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156	120	276
	비학위과정	38	330	368
원격평생교육원	학위과정	635	614	1,249

* 사당평생교육원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학위과정 중 대면 수업이 필수인 전문교육아카데미 과정 대부분이 운영되지 않았으며, 콘서트바토리(음악 실기 과정)만 운영함

5. 2020학년도 총신대학교 결산서

1) 교비회계 (기간: 2020.3.1 ~ 2021.2.29)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27,967,352,000	27,051,645,987	915,706,013	입학금 801,118,000 수업료 24,896,564,346 단기수강료 1,353,963,641
	전입및기부수입	14,475,433,000	12,089,289,844	2,386,143,156	기부금 7,116,867,972 국고보조금 4,972,421,872
	교육부대수입	2,744,309,000	891,051,002	1,853,257,998	입시수수료 198,823,070 증명.사용료 564,471,116 기타교육부대 127,756,816
	교육외수입	625,366,000	708,215,021	-82,849,021	예금이자 687,898,308 접수입 20,316,713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투자자기타자산	1,600,000,000	0	1,600,000,00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고정부채입금	153,420,000	10,000,000	143,420,000	임대보증금수입 10,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223,548,000	6,380,139,553	843,408,447	
	수입합계	54,789,428,000	47,130,341,407	7,659,086,593	
지출	보수	23,034,188,070	19,041,255,901	3,992,932,169	교원보수 11,761,744,785 직원보수 7,279,511,116
	관리운영비	7,373,359,930	5,375,428,369	1,997,931,561	시설관리비 3,028,566,097 일반관리비 1,580,782,729 운영비 766,079,543
	연구학생경비	15,207,363,000	11,585,186,668	3,622,176,332	연구비 434,964,360 학생경비 10,951,407,584 입시관리비 198,814,724
	교육외 비용	108,200,000	104,391,981	3,801,019	잡손실 104,398,981
	전출금	0	0	0	
	예비비	199,200,000	0	199,200,000	
	투자자기타자산	7,582,207,000	4,494,011,659	3,088,195,341	원금보존장학기금 3,000,000,000 임의연구기금 21,824,106 임의건축기금 1,342,634,456 임의장학기금 53,720,870 임의퇴직기금 22,516,161 임의특정목적기금 53,316,066
	고정자산매입지출	1,131,490,000	788,230,355	343,259,645	기계기구 206,823,210 집기비품 278,429,610 도서구입 302,977,535
	고정부채상환	153,420,000	0	153,42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741,829,474	-5,741,829,474	
	지출합계	54,789,428,000	47,130,341,407	7,659,086,593	

2) 신대원장학기금 (2021. 02. 28. 현재)

순서	기탁자	설치연월일	합계	비고
1	100주년출판기념	06.10.25	49,168,707	
2	갈릴리여선교회	88.11.30	9,061,037	
3	강상헌	88.02.24	28,126,155	
4	강응섭	81.03.15	43,877,489	
5	기타(해외유학생)	02.07.02	46,151,485	
6	김득용	84.04.07	3,280,949	
7	김의원 교수	06.12.27	33,481,356	
8	김의환	97.11.20	60,104,916	
9	김진택	04.08.14	9,538,709	

순서	기탁자	설치연월일	합계	비고
10	김희보	81.03.16	58,945,612	
11	대학장학기금	99.10.28	10,830,233	
12	동지상사	91.03.14	5,067,237	
13	류재양	04.12.22	5,569,810	
14	박병호	98.01.13	27,048,950	
15	백남조	81.03.16	52,125,124	
16	벨엘장학	87.04.06	14,191,365	
17	서독교회	84.03.08	10,195,341	
18	서만수	81.03.16	3,378,395	
19	손두환	83.04.16	26,982,433	
20	신대원 교수회	04.03.20	6,136,509	
21	신정인	83.03.09	15,131,425	
22	안명복	98.01.03	15,834,408	
23	엄묘선	81.03.16	17,465,541	
24	오길순	93.05.31	78,753,514	
25	은태철	00.03.01	15,648,266	
26	이정자	93.08.05	20,949,004	
27	이정현	03.02.17	12,723,914	
28	이종옥(염광교회)	01.09.08	159,266,520	
29	정문숙	02.08.24	24,886,352	
30	정성구	88.11.10	3,503,077	
31	조영덕	86.02.21	15,201,883	
32	채기은	98.03.01	3,444,416	
33	천정웅	81.08.30	24,192,849	
34	초량교회	94.02.08	4,788,875	
35	총신여동문회	84.01.30	59,317,984	
36	충현교회	81.03.16	199,403,198	
37	한병기	89.07.30	14,886,162	
38	홍영기	83.03.02	7,116,012	
39	대구동신교회	05.11.28	32,698,385	
40	새한교회	06.03.29	78,068,610	
41	주기철	82.10.26	59,212,368	
총계			1,365,754,578	



6. 2020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1) 대학 2020학년도

(1) 교내장학금 (2020.3.1. ~ 2021.2.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과수석장학금	8	8,044,000	9	17,523,500
성적우수(A)	76	57,373,000	96	80,097,000
성적우수(B)	44	19,124,000	45	23,419,000
성적우수(C)	45	20,100,000	45	19,670,000
실기우수장학금	4	3,100,000	4	4,000,000
어학우수장학금	3	3,000,000	7	6,680,000
근로장학금(근)	107	94,953,860	85	68,286,205
봉사장학금	59	35,258,000	63	35,900,000
보훈장학금(교내대응)	10	17,492,500	7	13,190,000
은혜장학금A	54	120,893,200	51	55,714,000
교직원장학금(직계)	3	10,258,000	3	9,802,000
사회봉사장학금	8	3,908,000	4	2,000,000
교역자자녀장학금	10	6,405,000	12	8,849,000
북한이탈주민장학금(교내대응)	8	14,146,000	8	13,177,000
가족장학금	8	6,566,000	16	13,774,000
사랑장학금	28	36,114,000	32	39,150,000
국가근로장학금(교내대응)	147	36,064,800	122	25,534,800
은혜장학금B	224	220,633,800	260	171,869,000
은혜장학금B(코로나19)	1	1,500,000	3	2,693,000
홍보대사장학금(근)	8	12,900,000	12	18,500,000
튜터장학금(근)	35	12,420,000	41	15,730,000
지성장학금	1	3,888,000	1	3,432,000
인성장학금	1	2,762,000		
국제화장학금	1	3,108,000	4	7,854,000
입학장학금(수, 차석)	12	24,113,600		
보훈장학금(교내 : 본인전액)	1	3,108,000	1	3,108,000
임용고시장학금	12	6,000,000	12	5,662,000
재직자(중독재활상담)	5	4,850,000	6	6,000,000
은혜장학금B(장학사정관)			1	500,000
성적향상장학금	8	3,600,000	8	3,600,000
학과추천장학금	8	6,332,000	10	9,324,000
정보화장학금			2	1,000,000
은혜장학금C(생)	12	2,400,000	32	6,400,000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S마일리지장학금(생)	215	48,646,000	110	16,883,500
코로나19국복특별장학(생)	1,533	153,300,000	1,451	145,100,000
총합계	2,699	1,002,361,760	2,563	854,422,005

(2) 외부장학금 (2020.3.1. ~ 2021.2.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2)	1	1,550,000	1	1,550,000
국가근로장학금(교외)	147	309,569,100	122	240,533,000
국가장학금1유형	567	1,131,703,100	601	1,213,757,500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275	662,069,000	274	664,244,000
국가장학금2유형	341	173,170,000	268	122,734,200
국가장학금2유형(코로나19)	2	674,000	9	5,845,000
근로(신대원동창회)장학금			1	1,000,000
농어촌희망재단	1	500,000	2	1,000,000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근)	26	16,948,000	78	36,884,200
보훈장학금(보훈처)	9	17,492,500	7	13,190,000
북한이탈주민장학금(통일부)	8	14,146,000	8	13,177,000
삼일교회장학금	22	19,100,000	20	18,162,000
서울장학재단장학금	13	11,500,000	15	11,000,000
열린교회장학금	2	2,000,000	2	2,000,000
예은장학금	1	2,000,000	1	2,000,000
외부기탁장학금(단회성)	9	10,261,160	10	15,086,860
외부기탁장학금(생활비)	26	28,626,000	135	46,126,000
인문100년장학금	7	10,412,000	5	13,274,000
인문100년장학금(생)	2	4,000,000	2	4,000,000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385	68,040,000	6	1,059,400
충동창회장학금(생활비)			53	28,459,100
충신백만(군종사관후보생)장학금	16	25,252,000	29	48,116,000
충신백만(기도후원회)장학금	26	24,934,500		
충신백만(외국인)장학금	6	10,673,200	7	14,216,400
취업연계(생)희망망사다리1(생)	1	2,000,000	1	2,000,000
취업연계장학-희망망사다리1유형	1	3,108,000	1	518,000
푸른등대기부장학금(생)	4	4,000,000	3	4,000,000
푸른등대삼성장학금(생sos)	1	1,500,000	1	1,500,000
형석장학금	6	5,662,000		
형석장학금(생활비)	5	4,338,000	10	10,000,000
총합계	1,910	2,565,228,560	1,672	2,535,432,660



2) 신학대학원

(1) 교내장학금 (2020. 3. 1 ~ 2021.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입학성적우수(수석)	10,527,000	3	9,695,000	3	20,222,000	6
입학성적우수(차석)	주기철목사장학회		주기철목사장학회		주기철목사장학회	
입학성적(3등 ~ 5등)	7,051,800	3	4,700,600	2	11,752,400	5
입학성적(과목별)	3,358,000	2			3,358,000	2
학기성적(A)전액	6,337,000	2	5,837,000	2	12,174,000	4
학기성적(C)반액	57,033,000	36	88,854,500	55	145,887,500	91
원호가족	2,400,000	6	800,000	2	3,200,000	8
기여	42,040,850	76	45,018,750	101	87,059,600	177
친족	39,330,000	24	42,180,500	26	81,510,500	50
특별장학금(코로나19)	123,800,000	1,238	122,400,000	1,224	246,200,000	2,462
외국인학생(2·3학년)	10,705,500	8	11,305,500	9	22,011,000	17
외국인학생(신입생)	8,995,000	6	7,316,000	5	16,311,000	11
장애인	1,200,000	2	2,400,000	4	3,600,000	6
외국학교 교환학생						
가계(1)	103,268,000	48	118,000,000	54	221,268,000	102
가계(2)	110,000,000	110	189,000,000	189	299,000,000	299
교직원(직계)						
외국인학생(글로벌)	64,158,500	40	62,479,500	39	126,638,000	79
총계	590,204,650	1,604	709,987,350	1,715	1,300,192,000	3,319

(2) 외부장학금 (2020. 3. 1 ~ 2021.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외부기탁	189,725,500	88	239,696,000	142	429,421,500	230
외부기탁(생활비)	16,795,250	18	13,826,000	12	30,621,250	30
외부기탁(글로벌생활비)	7,693,000	13	6,000,000	12	13,693,000	25
외부기탁(글로벌수업료)	52,913,000	27	42,731,500	26	95,644,500	53
주기철목사기념장학회	13,665,000	4	6,496,000	2	20,161,000	6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	10,000,000	10	10,000,000	10	20,000,000	20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의무입사비)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글로벌의무입사비)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군목후보생)	125,004,000	40	123,374,000	40	248,378,000	80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제주노회)	23,166,000	9	21,566,000	9	44,732,000	18
총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근로)	42,333,620	70	46,320,500	69	88,654,120	139
총계	481,295,370	279	510,010,000	322	991,305,370	601

7. 국제협력 분야

1) 외국대학과 교류현황 (MOU 체결교)

체결일	대학(기관)명	국가
2015.05.	The Theological University of Apeldoorn	네덜란드
2015.05.	Union Biblical Seminary	인도
2015.04.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5.03.	Christian University of Indonesia(UKI) Jakarta	인도네시아
2014.05.	Calvin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4.02.	The SCD Korean school of Theology, Sydney College of Divinity	오스트레일리아
2014	Theologische Universiteit Kampen	네덜란드
2013.12.	Africa Institute of Music	우간다
2013.05.	Driestar Christian University	네덜란드
2013.05.	Zwolle Reformed University	네덜란드
2013.01.	Preschool Department of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중국
2012.10.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2.05.	VU University Amsterdam	네덜란드
2011.11.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미국



체결일	대학(기관)명	국가
2011.07.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벨기에
2011.04.	Azusa Pacific University	미국
2010.08.	Westhill International school	필리핀
2010.08.	Asia 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	필리핀
2010.04.	Kuyper College	미국
2010.04.	Trinity Christian College	미국
2010.04.	King's University College	캐나다
2010.04.	Redeemer University College	캐나다
2008.10.	Wales Evangelical School of Theology (Union School of Theology)	영국
2006.10.	Dordt University	미국
2005.05.	Eastern University	미국
2005.04.	Biola University	미국
2005.03.	Camotes Hillside Academy	필리핀
2005.01.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미국
1998.08.	Moscow State University -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러시아
1998.07.	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일본
1998.04.	University of Pretoria	남아공
1997.04.	Geneva College	미국
1996.07.	Belhaven College	미국
1996.07.	Mackenzie Presbyterian Institute	브라질
1996.0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미국
1996.05.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미국
1996.04.	University of Stellenbosch	남아공
1996.04.	Jerusalem University College	이스라엘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1.04. 기준)

대학	대학원			어학연수과정	총계
	석사	박사	소계		
5	59	2	61	72	138

8.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신대학교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신대학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신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충신대학교 교비회계의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의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



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총신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수지 및 재무성과와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자금수지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 2021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서

1) 수입

(당기: 2021. 03. 01부터 2022. 02. 28 까지 단위: 천원)

(전기: 2020. 03. 01부터 2021. 02. 28 까지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21학년도 예산액		2020학년도 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등록금수입	28,162,289	54.4	27,967,352	51.0	194,937	0.7
전입및기부수입	11,271,400	21.8	14,475,433	26.4	△ 3,204,033	-22.1
교육부대수입	2,342,784	4.5	2,744,309	5.0	△ 401,525	-14.6
교육외수입	428,073	0.8	625,366	1.1	△ 197,293	-31.5
투자및기타자산수입	2,000,000	3.9	1,600,000	2.9	400,000	25.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0	0	0.0	0	0.0
유동부채입금	0	0.0	0	0.0	0	0.0
고정부채입금	109,500	0.2	153,420	0.3	△ 43,920	-28.6
기본금	0	0.0	0	0.0	0	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416,844	14.3	7,223,548	13.2	193,296	2.7
수입합계	51,730,890	100.0	54,789,428	100.0	△ 3,058,538	-5.6



2) 지출

(당기: 2021. 03. 01부터 2022. 02. 28 까지 단위: 천원)

(전기: 2020. 03. 01부터 2021. 02. 28 까지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21학년도 예산액		2020학년도 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보수	21,705,229	42.0	23,034,188	42.0	△ 1,328,959	-5.8
관리운영비	7,730,523	14.9	7,373,360	13.5	357,163	4.8
연구학생경비	15,353,180	29.7	15,207,363	27.8	145,817	1.0
교육외비용	65,000	0.1	108,200	0.2	△ 43,200	-39.9
전출금	0	0.0	0	0.0	0	0.0
예비비	600,000	1.2	199,200	0.4	400,800	201.2
투자자기타자산지출	3,561,498	6.9	7,582,207	13.8	△ 4,020,709	-53.0
고정자산매입지출	2,605,960	5.0	1,131,490	2.1	1,474,470	130.3
유동부채상환	0	0.0	0	0.0	0	0.0
고정부채상환	109,500	0.2	153,420	0.3	△ 43,920	-28.6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0	0	0.0	0	0.0
지출합계	51,730,890	100.0	54,789,428	100.0	△ 3,058,538	-5.6

10. 총회신학원

1) 학생현황 (2021.07. 현재)

구분	목회전문		합계
	재학생	휴학생	
1학년	0	0	0
2학년	0	1	1
3학년	3	0	3
합계	3	1	4

2) 2020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1) 교내장학금 (2020. 3. 1 ~ 2021.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특별장학금(코로나19)	300,000	3	400,000	4	700,000	7
총계	300,000	3	400,000	4	700,000	7

(2) 외부장학금 (2020. 3. 1 ~ 2021.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외부기탁						
충신백만기도 후원장학금			400,000	1	400,000	1
총계			400,000	1	400,000	1

11. 부속/부설기관 현황

1) 도서관 (2021.7.30. 현재)

구분		내용			비고	
개관 시간 (학기중)	중앙도서관	4층 일반열람실 / 5층 대학원 열람실		06:00 ~ 24:00	대학 대학원	
		3층 자료실, 대출실 (단행본/참고봉사)	월, 화	09:00 ~ 21:00		
			수, 목, 금	09:00 ~ 18:00		
	양지도서관	2층, 4층 자유열람실		24시간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4층 글로벌라이브러리		09:00 ~ 16:30		
		3층 자료실, 대출실 (단행본/참고봉사)	월, 화, 수, 목	08:00 ~ 22:00		
시설	중앙도서관	대학원 열람실	5층 열람실	296.1㎡	계	3,163.81㎡
		일반열람실	4층 열람실	506.52㎡		
		일반자료실 참고봉사실	서가,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1742.7㎡		
		도서관 로비	북카페	618.49		
	양지도서관	자유열람실	2층 열람실 개혁신학연구센터	1,628㎡	계	5,700㎡
		일반자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학위논문실	1,628㎡		
		글로벌라이브러리	4층 열람실 귀중본실	2,444㎡		
열람석	중앙도서관	대학원 열람실	5층 열람실	134석	계	702석
		일반열람실	4층 열람실	371석		
		자료실	자료실, 북카페	54석		
			전자정보실	45석		
			참고열람실	98석		
	양지도서관	자유열람실	2층 열람실 개혁신학연구센터	318석	계	1,108석
		일반자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학위논문실	221석		
		글로벌라이브러리	4층 열람실 귀중본실	569석		



구분		내용			비고	
소장 자료	중앙도서관 양지도서관	도서자료	국내서	283,296권	계	679,301권
			국외서	396,005권		
		연속간행물	304종		계	304종
		비도서자료	광디스크	4,444점	계	13,241점
			테이프	1,580점		
			마이크로필름	414점		
			마이크로피시	6,795점		
			기타	8점		
		전자자료	전자저널	10종		
			웹DB	18종		
			e-book	209,095종		
			e-learning	2종		

2) 생활관

구분		사당동캠퍼스		양지캠퍼스				계
		남자	여자	제1	제2	제3	복지관	
연건평		515평	208평	1,417평	674평	2,451평		5,265
수용인원(실)		240명	63명	660명	264명	380명		1,607
		62실	16실	165실	66실	95실		404
식당규모		종합관학생 : 260석 종합관교직원 : 72석			-	학생 : 410석 교직원 : 80석 VIP : 20석		842석
부 대 시 설	사무실	1		-	-	1		2
	사목실(관장)	1		-	-	-		1
	내빈실	-	-	-	-	-		0
	외빈숙소	-	-	-	-	5		5
	교수숙소	-	-	-	-			0
	직원숙소	-	-		-	-	2	2
	휴게실	2	1	3	3	5(여자포함)		14
	Internet cafe	-	-	-	-		1	1
	샤워실	4	2	8	3	10		27
	화장실	4	2	8	7	12	2	35
	식당	-	-		-	1		1
	교수연구실	-	-	-	-	27		27
	강의실	-	-	-	-	2		2
	의무실	-	-	-	-	1		1
	상담실	-	-	-	-	-		0

구분		사당동캠퍼스		양지캠퍼스				계
		남자	여자	제1	제2	제3	복지관	
	컴퓨터실	-	-	-	-	-		0
	인터넷실	-	-	-	-	-		0
	이발소	-	-	-		-		0
	회의실	-	-	1(사생회실)	-	-		1
	안내실	1		-	-	-		1
	보일러실	1	1		1			3
	매점	-	-				1	1
	서점	-	-				1	1
	체력단련실	1	-		3			4

3) 기타 부속 / 부설기관 및 연구소

구분	기관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대학부속유치원	비학령기 아동교육	
	신학지남사	교수연구발표, 한국교회의 신학방향제시	계간
	출판부	신학교재 및 연구도서 발행	
	충신대보사	대학신문	1972. 3. 2 창간
	충신원보사	신학대학원 신문	1981. 4. 26 창간
	교육방송국	대학방송	1974. 4 개국
	섬김리더교육원	대학생들의 경건 훈련 지도를 통한 지도자 배양	
부속·부설기관	평생교육원	○ 충신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 개발에 기여하며, 나아가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 학위과정(학점은행제) 1.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 2. 총장명의 학위수여 가능한 전공 : 신학, 교회음악, 사회복지학, 상담학 ○ 비학위과정 1. 교회교육,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 2. 전문교육아카데미 : 장로교육원, 실버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3. 콘서바토리 :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음악 전문가를 양성하는 1:1 레슨 중심 과정	1999년 3월 설립



구분	기관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부속원격 평생교육원	○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 보안·정보 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고 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국가평생교육원 인증기관 ○ 대학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원격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본교 시간강 사들로 구성된 학부 수준의 교육 제공 ○ 주요 운영과정(학위과정) 1. 신학전공(총장명의 학위수여 가능) 2. 사회복지학 전공(총장명의 학위수여 가능)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2013년 설립
	경건훈련원	재학생들의 경건훈련의 중심 / 관 입사를 통한 전 인격적 신앙지도 미래 교회지도자들의 신앙인격 수양의 산실	
	산학협력단	대학과 교회와의 협력모델 개발 대학 지식 산업의 개발과 적용 연구 대학 외부연구비 관리	
	총신상담센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과 기독교진로상담 운영 및 연구 학년별 집단 및 심리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성고충상담 운영 생명존중캠페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관리	
	교회선교연구소	한국교회문제연구, 진단 선교정보의 수집, 분석, 방향제시	학술지 발간 각종세미나 개최
부 설 연 구 소	기독교 교육연구소	1. 목적 :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기독교 교육 발전 2. 목표 1)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역량 강화 2) 연구소에서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지원 3)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의 연계된 기독교 교육의 현장성 강화 3. 연간활동 1) 1학기 중에 총신대와 고신대의 기독교교육연구소 주관 하에 연 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신대와 고신대 교수들이 양 학교를 교차 방문하여 논문을 발 표하고, 발표된 논문을 보완하여 논문집으로 출판한다. 2) 2학기 중에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의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매 해 다른 주제를 통해 교수나 목회자, 박사들을 초 청하여 기독교교육 제반 학문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세미나의 발표 논문들을 취합하여 기독교교육연구소 학술지 “기 독교교육연구”를 발행한다.	
	성지언어 연구소	1. 동계 어학 강좌(10월 ~ 2월) 매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총신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및 복학생에게 성경 언어(헬라어, 히브리어)를 교육시킨다. 2. 강의 개설 및 커리큘럼 보고(1학기 / 2학기) 총신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및 기타 고대 근동 언어에 관련한 강의를 학기 중 선택과	

구분	기관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목으로 개설한다. 그 개설된 과목의 강사 섭외 및 내용을 교무처에 보고한다. 3. 성지 답사(3월 ~ 8월) 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연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지 및 기독교 유적 이해를 돕고 준비된 학술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입찰공고 - 입찰위원회 - 설명회 - 성지답사 홍보 - 모집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 성지 답사 전 성지에 대한 수업을 실시한다. 라. 성지 답사 현장에서 현장수업 및 특별세미나를 실시한다. 마. 다양한 코스로 성지와 기독교 유적을 답사한다. 1) 구약성지 2) 신약성지 바. 성지 답사 후 성지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한다. 4. 성경 연구 프로그램 설명회 및 공동구매(1학기 / 2학기) 학술 연구를 돕기 위해 성경 연구 프로그램(로고스, 어코던스 외) 설명회를 열고, 일정기간을 두고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할인된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5. 학술세미나 (10월 ~ 11월) 매년 가을에 언어학과 성경 해석, 성경지리에 관련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6. 성경지리 사진 자료집 제작 및 제공 가. 성경지리와 문화, 사회,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성지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성지언어연구소로 요청 시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다. 2014 ~ 2016년 3년간 사진 자료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약 성지 답사 자료집을 출판하였으며, 신약자료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성지답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성지답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7. 방학특강 (5 ~ 7월, 11 ~ 1월)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성경원어와 성경연구프로그램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8. 단행본 발간 성경 원어와 관련한 단행본을 발간하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헬라어, 히브리어 교재를 발간, 교정하여 최적의 맞춤형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영어, 중국어 과정 동계어학강좌 진행을 위하여 헬라어 교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교회음악연구소	교회음악의 흐름과 발전방향을 연구 및 제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연주회 개최 교회음악전공자의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12.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u>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	의미 불분명한 단서 조항 삭제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 자 할 때 <u>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 ② <좌동>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반영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u>일반회계</u> 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좌동> ② 법인회계는 <u>일반업무회계</u> 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좌동>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유지) ② <u>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u> ③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u>제2항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u> ⑤ <u>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u> ⑥ <u>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u>	사립학교법 제29조 반영(36차) 및 교육부 시정 사항 반영(37차)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총장 포함) 2. 감사 3인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총장 포함(36차) 이후 교육부 시정 지시에 따라 원복(37차)
제19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신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3. 총장인 이사의 경우 그 총장의 임기에 따른다. ② <좌동>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3. 삭제 ② <좌동>	총장 당연직 이사로 임기 사항 포함(36차) 후, 교육부 시정 지시에 따라 원복(37차)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u>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u>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u>본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 중에서</u>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u>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u> 취임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u>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u>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u>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7.9.15. 이전 회복(36차) 후, 교육부 시정 지시에 따라 원복(37차)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 ④ (생략)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u>단수 추천</u> 한 자를 선임한다. ⑥ ~ ⑧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반영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좌동>	① <좌동>	직무대행 지명 없을 경우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좌동>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최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선임이사는 임원승인 일자가 가장 앞선 자이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좌동>	최소한의 순서 정하는 취지(36차), 선임이사 기준 명확히 제시(37차)
제28조(이사회 의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제28조(이사회 의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① <좌동> ② <좌동> ③ 이사회 의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 반영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마련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신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좌동> 2. <좌동> 3. 임원과 학교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좌동: 개정 없음)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반영 - 임원과 학교법인 이해관계 포괄적 적용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교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	(좌동: 개정 없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반영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인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4. 학생 2인 5. 동문 2인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인 ② <좌동>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제31조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좌동: 개정 없음)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u>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4항 반영
<신설>	제39조의3(총장추천위원회)	제39조의3(총장추천위원회)	
<신설>	① <u>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u> ② <u>총장추천위원회는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한다.</u> ③ <u>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회는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u> ④ <u>총장추천위원회는 2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u> ⑤ <u>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신입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한다.</u> ⑥ <u>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제39조의3(총장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회는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2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신입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한다. ⑥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총장추천위원회 신설(36차), 위원 수 구체화(37차)
제41조(휴직의 사유)	제41조(휴직의 사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u>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59조 반영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 5. (생략)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설> 8. ~ 10. (생략) <신설> 11. <u>안식년에</u> 해당하여 연구하게 된 때	양을 요할 때(<u>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u>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좌동> 7의2. <u>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u> 8. ~ 10. (현행과 같음) 11. 「<u>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u>연구년에</u> 해당하여 연구를 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제42조(휴직의 기간)	-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 9. (생략)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는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41조 제7호 및 <u>제7호의2</u>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 9. (현행과 같음)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1. <u>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임 기간으로 한다.</u> 12. <u>제41호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	(좌동: 개정 없음)	연계 조항인 제41조(휴직의 사유)의 변경에 따른 연계 조정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신설>	<u>13. 제41조 제13호의 휴직기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u>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① <좌동>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0호, <u>제12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u>임용권자는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u> ④ <u>제41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u>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3항 반영
제45조(직위의 해제)	제45조(직위의 해제)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	① <좌동>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u>제2호 또는 제3호</u>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	(좌동: 개정 없음)	없는 조항 표시 삭제(자체 불일치 해소)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 ⑦ (생략)	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면직의 사유)	제47조의2(면직의 사유)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제4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제4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58조 반영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이하 본 조에서 “ 의사에 반하는 처분 ”이라고 한다)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없다. 다만,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좌동: 개정 없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반영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부총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④ (생략)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부총장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좌동: 개정 없음)	복수의 부총장이 1년씩 하는 실정 반영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좌동: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반영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 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65조 반영
<신설>	제67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신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반영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7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조 이동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좌동 : 개정 없음)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반영



기존 (2020.9.17. 이전)	36차 개정 (2020.9.18.)	37차 개정 (2020.12.11.)	비고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거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2(직원인사위원회)	제85조의2(직원인사위원회)	제85조의2(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 <u>임용</u>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하의 <u>교원과 직원</u>으로 구성하되, <u>직원 4명 이하</u>를 포함한다. ③ ~ ⑤ (생략)	① 직원의 <u>임용 등 인사</u>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u>9명 이하의 처장급 이상 교원과 팀장급 이상 직원</u>으로 구성하되, <u>직원 4명 이상</u>을 포함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① 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u>9명</u>의 처장급 이상 교원과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 4명 이상을 포함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할청 시정요구 (사립대학정 책과 - 5234) 반영(36차), 위원회 위원 수 구체화(37차)
제91조(총장 등)	제91조(총장 등)	제9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 대학 담당 부총장 및 <u>대학원 담당 부총장</u>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이, <u>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대학원장이</u> 겸임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u>부총장이</u> 대행한다.	(좌동 : 개정 없음)	제9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 대학 담당 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이 겸임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u>대학부총장, 신학대학원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u> 대행한다.	기구 축소(부총장 3인에서 2인으로 변경), 총장 직무대행자 순서 지정 등 직제규정 일치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의 총회 승인 요청서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2021년 4월 개원)은 총회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장로와 안수집사를 대상으로 성경과 교리, 교회정치행정 등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3학기 이수자에게는 총회장, 총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3. 장로교육원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비
1학기	구약신학, 조직신학	학기당 50만원
2학기	신약신학, 교회사	
3학기	선교와 상담, 교회교육과 교회정치행정	

* 교육과정은 총회와 논의하여 현장과 밀접한 다양한 교육으로 수정·보완 가능

- 2) 장소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제2종합관
- 3) 시간 : 학기당 10주(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10분)
- 4) 정원 : 40명
4. 금번 제106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을 우리 교단의 장로 및 안수집사를 위한 총회의 교육과정으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9월

총 신 대 학 교 총 장